

—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5월 2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5월 25일

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유사기능 통·폐합 및 업무증가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되,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조정 : 정원의 총수 : 1,382 ⇒ 1,400명(증 18명)

- 조정방법

- 혁신분권, 지역균형발전 등 업무신설 및 증가분야 인력증원

- 직렬·직급별 조정내역

구 분	계	6급	7급	8급	9급
계	18	5	7	4	2
행정	16	3	7	4	2
건축	1	1			
간호+의료기술	1	1			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
- 행자부 자제12200-247(2003. 5. 9)호의 표준정원시행지침
- 자치행정과-1884('04. 3. 6)호의 2004년도 시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
- 자치행정과-2283('04. 3.20)호의 구미시 기구 및 정원조정승인(협의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에 의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유사기능 통·폐합 및 업무증가분야의 인력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시민복지회관의 감축된 행정5급 1명은 체육관리사무소장으로 상계 조정하고, 6급이하 18명을 증원하여 직렬별·직급별로 조정함으로써 총 정원을 1,382명에서 1,400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